

채권신고 및 출자전환 안내

주식회사 태영건설 제68회차 무보증 사채권자 여러분, 2024년 06월 11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현재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가 2024년 07월 1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, 향후 원활한 출자전환 실행과 이자 지급을 위하여 귀하가 보유하고 계신 채권에 대한 신고 및 출전전환 관련 서류를 안내드립니다. 서류접수 후 당사는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하고 계신 채권의 50%를 출자전환하고, 잔여 채권인 50%에 대해 회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.

이에 당사 홈페이지(www.taeyoung.com)에 첨부된 (주)태영건설 제68회차 무보증 사채관련 <채권신고 / 출자전환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>를 참고하시어, **2024. 7. 22(월)부터 2024. 8. 7(수)까지 회사로 관련 서류를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기간까지 접수된 채권들에 대해, 우선적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신규주식 입고 및 이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
2024. 8. 7(수)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향후 순차적으로 이자 지급 및 출자전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 미제출로 인해 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자와 신주를 지급하여 드릴 수 없으니, 사채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채권신고 및 출자전환 안내절차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.

※ 만약 과거 사채권자집회 시 발급받으신 전자등록증명서를 아직 본인 계좌에 재입고하지 않으신 사채권자분께서는 우선 전자등록증명서를 본인의 증권 계좌에 재입고하신 후, 첨부 절차에 따라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.

- 첨부 내용 : 1. 채권신고 및 출자전환 절차 요약
- 2. 업무절차 및 서류작성 안내
- ※ 별첨. 회사 송부 제출서류 리스트 (요약)

- 채권신고 및 출자전환 관련 제출서류(본인작성) 양식 - 별도 엑셀파일 첨부

1. 채권신고 및 출자전환 절차 요약

절 차	내 용
① 보유채권 50% 계좌대체 ※ 출자전환 대상	▶ 채권보유 증권사 지점 방문 후 채권 계좌대체 요청 (대체하실 계좌 : NH투자증권 209-01-449066, 태영건설) ※ 출자전환을 위해 폐사 계좌로 임시 예치 목적임
②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	▶ ① 본인 작성 서류 (간편 신고 양식) ② 증권사 발급 서류 ③ 추가 서류 } 각각 작성 (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업무절차 및 서류작성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.)
③ 제출서류 회사 앞 송부	▶ 제출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부탁드립니다. (0724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, 10층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TFT 앞)
④ 경과이자 지급	▶ 채권신고 기간 이후 도래하는 정기 이자지급일 (8/12 예정) ▶ 향후 이자지급은 매월 11일 제출하신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.
⑤ 출자전환 실행	▶ 법원 결의의 인가일('24.07.11)로부터 약 1.5개월 소요 예정 (8월 말) (사채원금과 주식인수대금 상계) ※ 전환시 채권말소 통지 예정
⑥ 출자전환 주식 지급	▶ 출자전환 주식 지급 : 출자전환일로부터 약 2주 소요 예정 (9월 중) ※ 보호예수의무기간 : 신주 상장일(출자전환 주식 지급일)로부터 1년

※ 향후 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.

2. 업무절차 및 서류작성 안내

① 보유채권 50% 계좌대체

□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증권사 지점 내방 후 계좌대체 (채권액의 50%)

※ 온라인(HTS) 계좌대체도 가능하나, 증권사별로 증명서 발급 등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증권사에 직접 내방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.

□ 대체하실 계좌 : NH투자증권 209-01-449066 (예금주 : ㈜태영건설)

②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

「본인 작성 서류, 증권사 발급 서류, 추가 서류 각각 준비」 ※ 별첨 : 제출서류 목록

□ 본인 작성 서류 (간편 신고 양식)

- ①채권신고서 1부
- ②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③출자전환 신청 서류 각 2부 (법원 등기용, 회사 보관용)
 - 청약신청서, 상계요청서, 채권 보유 확인서, 주식청약서
- ④의무보유 협약서 1부
- ⑤위임장 1부

☞ 첨부된 [채권신고 및 출자전환 관련 제출서류(본인작성)]를 다운로드(엑셀 파일) 하신 후 <간편신고양식>상 개인정보 / 채권정보 / 계좌정보에 입력 (푸른색 음영 부분)하신 후, 인쇄하여 최종 **인감 날인**(서명불가)하시면 됩니다.

※ 푸른색 음영 부분만 입력하시면, 입력된 정보가 출자전환 등 각 신청서류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 (날짜는 공란으로 작성)

※ 각 서류별 **인감 날인**란이 많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계좌 정보 中 주식 수령계좌는 향후 출자전환 시 신규 주식의 입고되는 계좌이며, **채권자께서 지정한 증권사 계좌로 입고될 예정입니다.**

※ 주식 수령 가능 지정 증권사 :

삼성증권, 신한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키움증권

*** 상기 증권사 이외의 증권사로 신주를 수령하실 채권자분은 당사 콜센터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.**

□ 증권사 발급 서류

- ①채권보유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1부
- ②채권 계좌대체 확인서 1부
- ③소유자증명서(원본) 1부

☞ 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발급 바랍니다.

- i) 채권보유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: **계좌대체 전일자로 발급 必**
(보유 채권금액 100%가 명기된 증명서)
- ii) 채권 계좌대체 확인서 : 채권(50%) 계좌 대체 후 증권사 통해 발급
- iii) 소유자 증명서(원본必) : 채권(50%) 계좌 대체 후 잔여채권(50%) 대상 발급

- ✓ 소유자증명서는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발급하는 증명서로, 기재된 행사기간동안 계좌대체, 권리행사 청구 등 처분제한이 걸리는 서류입니다.
- ✓ **소유자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 계좌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자전환을 위해 (주)태영건설 NH투자증권 계좌로 보유채권의 50%를 대체하시고 채권자께서는 필히 잔고 금액의 채권(50%)에 대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**
- ✓ 발급은 해당 증권사 지점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, 소유자증명서 발행 신청서 상에 있는 신청구분/발급방법은 “소유자 증명서”를 선택(직접발급 방식)하시고, 소유자증명서의 행사기간은 2027.05.12.까지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✓ 신청일 다음날에 지점을 방문하여 수령하시고, 수령하신 소유자증명서 원본은 우편으로 회사에 송부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✓ 추후 채권 매도나 이관 등 채권의 처분 필요시 채권자께서는 직접 (주)태영건설을 방문(필요시 우편발송)하시어 제출하셨던 소유자증명서를 수령하고, 증권사

지점에 반납하시면 처분 제한이 해제됩니다.

□ 추가 서류

[1] 개인 사채권자의 경우

- ①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 중 택1) 사본 1부
- ② 인감증명서 1부 제출
- ③ 계좌사본(채권보유 계좌, 주식 수령계좌, 이자 수령계좌) 각 1부
 - * 사채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, 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,
채권자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1부를 추가로 제출

※ 대리인 제출시 : 위 본인 제출시 필요서류에 더하여,

- ① 위임장(본인 인감 날인) 1부
- ②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
- ③ 대리인 명의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[2] 법인 사채권자의 경우

-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,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, ③ 사업자등록증(사본) 1부
- ④ 위임장(법인 인감 날인) 1부, ⑤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
- ⑥ 계좌사본(채권보유 계좌, 주식 수령계좌, 이자 수령계좌) 각 1부

※ 금융기관 보유 채권 중 일부/전부가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 중인 신탁
재산/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어 있을 경우 : 신탁재산/투자신탁재산에
귀속된 사채의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

③ 제출서류 회사 앞 송부

□ 제출서류는 당사 경영정상화TFT(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11, 태영빌딩
10층)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

☞ 송부처: 0724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, 10층 태영건설 경영정상화TFT

기타 채권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주식회사 태영건설 경영정상화TFT

① 콜센터(1577-6320) 또는 ② E-MAIL(TY68@taeyoung.com)로 문의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9일

주식회사 태영건설

대표이사 최 금 락

※ 별첨. 회사 송부 제출서류 리스트 (요약)

구 분	내 용
1. 본인 작성 서류	☐ 채권신고서 1부 ☐ 개인정보수집·이용 등 동의서 1부 ☐ 청약신청서 2부 ☐ 상계요청서 2부 ☐ 채권 보유 확인서 2부 ☐ 주식청약서 2부 ☐ 의무보유 확약서 1부 ☐ 위임장 1부
2. 증권사 발급 서류	☐ 채권보유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1부 ☐ 채권 계좌대체 확인서 1부 ☐ 소유자 증명서(원본) 1부
3. 추가 서류	1) 개인 사채권자 경우 ☐ 신분증 사본 1부 ☐ 인감증명서 1부 ☐ 계좌사본(채권보유 계좌/주식 수령 계좌/이자 수령 계좌) 각 1부 ※ 사채권자가 미성년자, 대리인 제출의 경우 서류안내문 참고 2) 법인 사채권자 경우 ☐ 법인등기부등본 1부 ☐ 법인인감증명서 1부 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☐ 위임장 1부 (법인인감 날인) ☐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☐ 계좌사본(채권보유 계좌/주식 수령 계좌/이자 수령 계좌) 각 1부